

의안번호	2214227
의 회 인	오세희 의원
회 답 일	2026. 1. 29.
추계번호	25A615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1. “통상조약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1의 2. “통상위기”란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국제적인 분쟁·전쟁·재난·제재 등 통상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국내 산업 및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4조제8항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u>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u> 2. <u>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u> 3. <u>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재량규정
3	안 제18조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 등)	① 정부는 통상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이하 “긴급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그 밖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긴급지원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통상위기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제8항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3	안 제18조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통상조약의 정의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안 제2조제1호나목), ②통상위기를 정의하며(안 제2조제1호의2), ③통상피해지원기업을 위한 국내외 유통망 확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안 제14조제8항), ④통상위기 발생 시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18조) 규정하는 내용임
- (안 제2조제1호나목) 통상조약의 정의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여러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 기관¹⁾과 합동으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1)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합동 운영 기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T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T,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본사 1곳, 지부 34곳)를 운영하고 있음

※ [참고자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재정사업

□ (안 제2조제1호의2·제18조) 개정안에 따라 “통상위기”를 ‘주요 교역국의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산업·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통상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통상위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구체적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 (안 제14조제8항) 개정안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에게 국내외 유통망 확보·홍보,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개최·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6조²⁾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제조업·서비스업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심의를 통해 연간 40개사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경영 혁신지원(컨설팅), 통상변화대응자금(시설·운전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후 략>

- 또한, 현행법 제14조제7항³⁾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에게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표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사업	2026년 예산(회계)	내용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지원(내내역사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	기술·경영 혁신지원	3억 7,600만원(일반회계)	○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제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전환자금)	융자지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사업전환자금 총 예산	○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 금리 2%(운전자금 5억 한 도, 지방소재기업은 70억 한도)

자료: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지원 방식,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3)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

[참고자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재정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코드)	내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통상협정국내대 책추진지원 (1935-301)	기발효 FTA의 성과 극대화 및 신규타결 FTA 확대에 따 른 활용지원 정책의 보완·시행을 통한 FTA 활용률 제고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 팅·상담·설명회 등 지원 - (FTA 전문인력양성) FTA 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일반국민(기업재직자 등)을 대상으 로 FTA 활용 실무교육 지원 - (통상협정 국내대책이행) FTA 이행상황 평가·성과 분석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지원 및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11,293	11,719
통상분쟁대응 (1936-401)	통상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 이익 보호 - (통상분쟁 및 잠재분쟁 대응) WTO규범 위반 조치 에 대한 정부간 WTO 제소·피소 등 분쟁해결절차 회부 및 대응을 통해 수출 지원 등 통상 이익 보호하 고, 타국 간 당사자 분쟁에 제3자 참여 및 대응체제 를 구축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 - (WTO 모의재판) 통상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 기 통상인력 육성 기반 마련 - (수입규제 대응강화)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반 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에 대한 민·관 합동 대 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상이익 보호 -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통상법 포럼의 정기 개최 (분기별)를 통해 통상법 현안 및 전문가 의견 공유 - (통상정책 홍보 및 대응)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 른 국가간 통상 이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 식 제고 및 정보·교육 제공 등 - (다자통상 협상추진) WTO, APEC, G20, OECD, ASEM 등 다자통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상 규범 수립 시 우리 이해관계 반영 및 보호주의 대응 강화 - (WTO협력강화) 우리나라 인재의 WTO 등 진출 확 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인력 파견 시 소요되는 체재 비 등 비용 지원	18,031	15,432

자료: 산업통상부